

인천지방법원 2019. 5. 9 선고 2018가단25438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

담당변호사 김민수, 박병주, 이경구, 채희철

피 고 1.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2. C

3. D

4. E

피고 1.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F

변론 종결 2019. 4. 18.

판결 선고 2019. 5. 9.

주 문

1.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.

2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,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4. 11. 4. 접수 제1581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가항 기재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3.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는 원고 및 피고들이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

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(이하 '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'라고 한다)의 승계참가인(이하 '피고 승계참가인'이라고 한다)은,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0. 10. 7. 피고 승계참가인에게, 원고가 이 사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. 11. 9. 접수 제109970호로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, 2010. 11. 11. 채무자인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함으로써, 피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H의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.

살피건대, 승계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 계속 중에 승계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, 이 사건 소가 2018. 10. 11. 제기되어 그 소장부분이 2018. 10. 25.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,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전인 2010. 10. 7.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

양도받아 2010. 11. 11. 그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,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,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따라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등기된 가압류권자 명의인은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승계참가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피고 승계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, 결국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.

2.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, C, D, E에 대한 청구부분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근거

(1)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, D, E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(2) 피고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3. 결론

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진아

청구원인

1.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.

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모친 소외 망 I가 1994. 1. 6. 매수하여 1994. 8. 29. 소유 명의를 취득하였으며, 이후 2012. 2. 15. 위 I가 사망하자 원고의 부친 소외 망 J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. 12. 10. 소유명의를 취득하였습니다.

이후 원고는 위 J이 2018. 3. 1. 사망하자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. 6. 18. 소유명의를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입니다.

(갑 제1호증 - 등기사항증명서)

2. 피고 생명보험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.

가. 한편 위 소외 망 I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잔금

500만 원을 당시 메도인 회사의 임원이었던 소외 망 G로부터 차용하였으며,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4. 11. 4. 집수 제158146호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고 합니다)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.

나. 이후 위 망 I 는 위 대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, 이후 소의 망 G 와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말소를 요구할 수 없었으며,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처럼, 소의 망 G 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어금은 2004. 11. 3.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어떠한 경우라 하여도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다. 그런데, 소의 망 G 는 2016. 11. 28. 사망하였는바(갑 제2호증 - 말소자초본) 그의 상속인인 피고 성명불상이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.
(소의 망 G 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실조회한 후 피고 성명불상에 대하여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)

3. 파산자 주식회사 B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다.

가. 파산자 주식회사 B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소의 G 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09. 11. 4.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9.

11. 9. 등기되었습니다.

나. 그런데,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변제되었으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위 압류 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며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인 과산자 주식회사 B의 과산판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4. 결론

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및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는바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지목록

1. 결합건물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동

[도로명 주소]

인천광역시 연수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 번호: 호

건물 내역: 철근콘크리트조 44.40㎡

- 이 상 -